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조리원의 연가 사용 및 긴급 사유 등으로 인한 조리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업무공백 발생 시,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하고, 영유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제공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어린이집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10회기 공지사항

신청지역	충북도내 어린이집(청주, 증평, 보은)				
지원우선순위	상시 > 긴급지원 > 유휴지원				
지원기간	▶ 2026. 10. 01.(목) ~ 2026. 10. 30.(금) ※ 대체조리원 연차 신청은 1일 단위로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2일 이상 연속 기간부터 신청 가능함				
신청기간	▶ 2026. 09. 01.(화) ~ 2026. 09. 10.(목) ※ 선착순 지원이 아닌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미배치기간	10월 5일(월) 대체 공휴일, 9일(금) 한글날, 대체조리원 연차신청일				
배치확인	▶ 배치확인일 : 2026년 9월 17일(목) 15:00 이후 / 배치결과 개별공지하지 않음 ※ 충북보육인플 홈페이지 어린이집 신청상태 '배치' 상태일 시 배치된 것임. 어린이집 신청상태 '신청' 상태일 시 미배치된 것임.				
배치인원	지원 1건당 1명의 대체조리원 지원 ※ 외부식판업체 이용·보조인력(시니어) 유무·어린이집 인원 수에 따라 대체조리원 최대 2인 배치 보조인력(시니어)는 조리업무(ex. 설거지, 전처리 등)를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함. 보조조리원≠시니어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정보 정확하게 기재) ※ 대체조리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영유아 인원 (현원) 식판외부업체, 보조인력 유무	60인 미만	60인 이상~100명 미만		100명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 1인	어린이집 조리원 : 2인 이상	
	식판외부업체, 보조인력(시니어) 有	대체조리원 1인 배치	대체조리원 2인 배치	대체조리원 1인 배치	대체조리원 2인 배치
	식판외부업체, 보조인력(시니어) 無			대체조리원 2인 배치	
※안내문의 대체조리원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배치하나, 어린이집 보조조리원 근무시간,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희망인원 등 원 상황에 따라 배치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II. 신청방법

신청방법	충북보육인플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충청보육인플 홈페이지 접속 → 어린이집 회원 로그인(비회원일시 회원가입 필요) →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신청’ 클릭 → ‘대체조리원 신청’ 게시판 클릭 →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 신청서 내용 누락없이 작성하여 ‘신청’ 버튼 클릭 시 신청 완료 대체조리원 신청 시 어린이집 정보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 어린이집에 있음
신청대상	지원대상 : 충청도 내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제외대상 : 보조조리원, 조리원 겸직 원장

III. 신청회기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IV. 지원기준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추가 구비서류	비고
상시	1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 청첩장	사전 신청
	2	연가(월 중 중복지원 불가) ※연차 신청은 1일 단위로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2일 이상 연속 기간부터 신청 가능함	1~5일 (연간 최대 15일)		
	3	건강검진	1일	- 건강검진 서류	
긴급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시 신청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퇴직	조리원의 퇴직*	1~5일	- 사직서 등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 진단서 - 입원확인서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 돌봄휴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유산(~11주 미만(3일)/12~15주(5일))	1~5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동일순위 내 우선순위기준		① 최근 배치기록이 적은 어린이집 ② 영유아+보육교직원 인원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1인 조리원 어린이집 ③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V. 지원 안내사항

i. 대체조리원지원사업 안내

- ▶ 본 사업은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 대체조리원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청주, 증평, 보은지역 대상으로만 대체조리원 파견이 가능하며, 추후 조리원 인력 확충 시 충북 도내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지역에도 지원 예정입니다.
- ▶ 업무인수인계서에 주의 및 유의사항 관련 작성이 누락되어 조리 시 발생하는 관련 사고의 모든 일의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지원사업과 당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은 가능)**
- ▶ 당월 내 1회 신청이나, 센터 내 대체조리원이 미배치된 경우는 1회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ii. 대체조리원 근무시간

- ▶ 대체조리원의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09:00~15:30까지)**이며, 「근로기준법」제 54조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철회 사유입니다.

iii. 대체조리원 업무

- ▶ **영유아의 오전간식, 점심식사(1식3찬), 오후간식**
* 조리업무로 인한 설거지 및 뒷정리까지 포함이나, 이외 업무(김장, 조리실 대청소, 어린이집 청소업무, 급식 배식, 차량운행지원)는 진행되지 않음. 설거지, 뒷정리 등 업무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업무시간 확인 바람.
- ▶ 대체조리원 파견 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 첫 날, 대체조리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iv. 대체조리원 지원철회 사항

- ▶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추후 대체조리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중단 요청 사유 : 상시·긴급사유로 지원받았으나 조리원이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식단표와 맞지 않는 조리업무 요구, 업무인수인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요구, 휴게시간 보장이 없는 경우, 대체조리원이 감염병 등으로 조리원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식품위생점검기간·평가제 현장 평가 주간 기간 등 식품위생·조리실 관련 위생점검기간인 경우
-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결혼·법정 연가 보장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조리원의 연가 및 긴급사유를 보장해 주시고,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에게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무지시는 불가합니다. **무관한 업무지시가 지속될 경우는 지원철회 사유이며,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 추후 신청 불가합니다. (무관한 업무지시 예시 : 조리실 대청소, 어린이집 청소, 김장, 급식 배식, 차량 운행지원)**
- ▶ **식품위생점검기간, 평가제 현장평가 주간 기간 등 식품위생·조리실 관련 위생점검기간은 대체조리원 파견이 불가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체조리원 신청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조리원 지원이 유지될 경우, 센터에서는 확인이 되는대로 지원철회를 요청할 것이며, 만약 해당 기간임을 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식품위생 관련 사항으로 일어나는 모든 개선사항 및 시정사항 등의 사항들은 어린이집(원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대체조리원지원사업 지원에 추후 3회기 지원불가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